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1999. 2. 8.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모토로라반도체통신(주) 의 부당한 광고행위 (9810광고1701) | <p>모토로라반도체통신(주)는 휴대폰의 특성상 휴대폰의 크기 및 무게와 사용시간은 일반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임에도 불구하고 '98.10.7.부터 10.29.까지의 기간 중 조선일보 등 16개 신문을 통하여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휴대형 무선전화기(이하 "휴대폰"이라 함)인 "스타택"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모토로라 디지털 스타택!"이라는 제목하에 스타택의 실제 크기를 명함크기와 비교하고 좌측 하단에 본 제품의 특징으로 "▶84cc의 초소형·초경량 폴더(Folder)타입, ▶8일(200시간) 연속대기, 340분 연속통화 ..." 등을 기재한 다음, 하단에 작은 글씨로 "...▶상기 시간은 메인배터리와 보조배터리(선택사양) 채용시 기준이며 ... 선택된 기능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휴대폰의 크기 및 무게표기는 소용량의 메인배터리 장착을, 사용시간의 표기는 메인배터리와 보조배터리인 대용량 배터리의 동시 장착을 전제로 하는 등 각각의 제품 특성에 대한 전제조건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판매하는 휴대폰이 마치 84cc의 크기 및 무게상태에서 8일 연속대기 및 340분 연속통화가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

1999. 2. 10.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주)세진상사의 부당한 광고행위 (9809광고1459, 9810기획 1873) | <p>(주)세진상사는 '97.4.15.부터 '98.5.6.까지의 기간 중 한국자동차문화신문 등 4개 신문에 총 13회에 걸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내연기관용 윤활유(이하 "엔진오일"이라 함) "SP-2000"의 성능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엔진오일인 "SP-2000"을 주입하여 도중에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고 17만km를 주행한 실험결과나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교환 청정엔진오일, 17</p> |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 <p>만km 주행실적”, “17만km 주행, 무교환 무보링 청정엔진오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SP-2000”을 주입하여 도중에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17만km를 주행한 실적이 있거나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하였으며, ’97년 초부터 ’98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제작·배포한 전단 18,000부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오일 교환주기 최고 50배 이상 연장됩니다. 최고 10% 이상의 연비향상과 휠터 교환이 5배 이상 연장됩니다. 50% 이상의 엔진운활계 통기기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오일, 연비향상 및 연료절감으로 경제성이 탁월합니다.”, “기존오일의 단점을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SP-2000”을 주입할 경우 마치 엔진오일 및 오일휠터의 교환주기가 연장되고, 연비가 향상되는 등 기존오일의 모든 단점을 해결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하였으며, ’98.9.29.부터 ’98.10.3.까지의 기간 중 사은행사를 실시하면서 신문, 전단 등을 통하여 동 기간 중 “SP-2000”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순서에 따라 가정용 정수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SP-2000”을 구입한 고객 중 설치비 명목으로 69,000원을 부담하는 고객에 한하여 부품가격이 60,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정용 정수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마치 구매고객에게 가정용 정수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 |

1999. 2. 11.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서울전자유통(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9810광고1753) | 서울전자유통(주)는 ’98.10.10.자 조선일보 등을 통하여 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에 대한 할인판매광고를 함께 있어서 「가을정기대바겐세일」이라는 제목으로 “최신형 PCS 20,000원 파격판매!”, “EVRC 최신형 휴대폰 80,000원 판매”, “지점당 5대 한정수량 판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후 실제로는 광고한 제품이 아닌 구형 PCS 제품 등을 판매하는 등 실제로는 최신형 휴대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값싼 PCS 제 |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미 광고한 신문 중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 품만을 할인판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가의 최신형 휴대폰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

1999. 2. 20.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사)전국수산물중도매인 협회 부산지회의 경쟁제한행위 (9809부사1569) | (사)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부산지회는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영업하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이 매주 일요일에 휴장하는 관계로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선사들이 일요일에도 개장하는 다른 위판장에 어획물을 판매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의 구성사업자의 중개수수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98.9.12.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선사들이 일요일에 휴장하지 않는 다른 수산물위판장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판매할 경우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해당 선사의 어획물을 일절 매수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선사들로 하여금 일요일에 개장하는 다른 수산물위판장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판매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선사들의 자율적인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여 부산지역 수산물위판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과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
| 제주양회협회의 경쟁제한행위 (9810광사1649) | 제주양회협회는 '96.2.9. 제주도 제주시에 소재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시멘트구매를 쌍용시멘트 34%, 동양시멘트 34%, 한라시멘트 32%의 비율로 공동구매하기로 결의하고 동 결의내용에 대해 쌍용시멘트 등 시멘트 3개사의 각 특약점 대표 3인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98.1.13. 개최한 정기총회에서는 구매비율을 쌍용, 동양, 한라 각각 33.3%의 비율로 동일하게 재조정하고 공동구매시점부터 동 구매물량을 구성사업자가 시멘트제조사와 체결한 구좌 수를 기준으로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배정했으며,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판매한 수익금을 공동으로 |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1,700천원 |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 <p>관리하면서 시멘트구입비, 부대비, 협회비 등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판매실적과는 관계없이 당초 배정 받은 물량을 기준으로 공동영업개시일인 '96.2.9.부터 해체일인 '98.10.7.까지 배분하였으며, 1996년부터 매년 정기총회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시멘트 40kg 1포당 협회 입금가격을 '96년도에는 3,000원, '97년도에는 3,300원, '98년도에는 3,600원으로 각각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의 시멘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공동구매 및 물량배정을 통한 이익금의 배분 및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방법으로 제주시 및 북제주군 지역의 시멘트 판매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 위반</p> | |
| (유)비지니스월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9810광사1780) | <p>(유)비지니스월드는 '98.9.15.부터 '98.9.30.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지점인 YMCA점의 오픈기념행사를 실시하면서 광주일보 등의 신문에 총 8회에 걸쳐 자신이 판매하는 이동전화단말기 중 "SCH-750"기종에 대한 광고를 함께 있어서 이동전화단말기에 장착된 배터리 용량별로 그 무게 및 사용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소용량 배터리 장착을, 사용시간은 대용량 배터리 장착을 전제로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이동전화단말기의 성능이 사실보다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이 판매하는 이동전화단말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98.9.15.부터 '98.10.30.까지의 신규구매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마티즈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 자신이 제공 가능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한도인 15만원을 467만원 초과하여 경품류를 제공하는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6호 위반</p> | <p>◎ 부당한 광고행위 및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
| (주)피죤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9810경축1651) | <p>(주)피죤은 각각의 대리점은 자신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대리점 각자의 영업전략과 영업여건 등에 따라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 11월부터 자신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으로부터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섬유유연제 제품인 피죤 등의 상품을 구입하여 주로 경남 밀양·창원지역 소매점에 공급하고 있던 피죤상사가 '98.1.8.부터 1.9.까지의 기간 중 기존 영업지</p> | <p>◎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과 동시에 자신과 거래하</p> |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 <p>역이 아닌 영등포 지역에 상품을 유출하자 피죤상사에 대해 '98년 1월 한달간 상품 출하를 중지하는 등 '97년 10월부터 '98년 1월까지의 기간 중 타지역에 상품을 유출한 대리점에 대해 출하중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섬유유연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점하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대리점간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전단 위반</p> | 는 모든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9811독관2036) | <p>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가락동도매시장 내의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의 매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율과 중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상장예외품목』의 농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율을 각각 1%P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 지급요율의 결정에 관여하여 그 요율을 0.25%P 인하하는 등 가락동도매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자신의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락동도매시장 내의 사업자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있는 위탁상장수수료 및 장려금의 지급요율을 직접 결정하거나 사업자들의 결정을 간섭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 ◎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가락동도매시장 내의 도매시장 법인(농협공판장 포함),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협의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

1999. 2. 25.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제천농지개량조합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9810전사1633) | <p>제천농지개량조합은 '98.4.1. 자신이 관리하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 소재한 매곡저수지에 대해 임차인인 유료낚시터 운영업자와 동 저수지 수면사용에 대한 3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정관 제46조제2항(수면사용료 경비징수기준)에는 총수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낚시터 운영관련 이용자수나 총수입금액 등에 대한 보고나 통보를 전혀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연간 수면사용료를 종전 2,000천원에서 10,000천원으로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p> | ◎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북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 <p>자신이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면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낚시터 조성과정에서 기존시설의 설치 및 구입, 주변환경조성, 자원조성 등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동 임대차계약을 중단하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신과의 거래를 중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저수지의 수면사용료를 자신의 정관에 정한 기준이나 통상적인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결정하여 거래상대방과의 계약과정에서 이를 적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 |
| 외환신용카드(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9810유거1189) | <p>외환신용카드(주)는 '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조달금리 상승으로 '97년 11월 중순부터 할부금융대출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96.9.1.부터 할부금융거래 제휴약정을 체결하고 장기간 계속적인 거래를 해 오던 (주)대신중공업이 '97.11.15.부터 '98.3.29. 까지의 기간 중 19건의 보증보험서를 발급받아 할부방식으로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자, '98.4.10. 상기 19건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주)대신중공업과 보증보험증권 효력의 유효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이유로 (주)대신중공업의 정기예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추가할부거래약정서를 체결한 후 보증보험사로부터 (주)대신중공업의 보증보험증권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주)대신중공업이 예금에 설정해 놓은 질권의 해지를 요청하는 등 담보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담보해지를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 <p>◎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과 동시에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도록 함</p> |

1999. 2. 26.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한국통신프리텔(주)의 위탁대리점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9810약일1674) | <p>한국통신프리텔(주)는 고객과 위탁대리점계약의 체결 시에 사용하고 있는 위탁대리점계약서상 계약의 효력에 대한 규정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에게도 당해 계약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규정함으로써 계속적인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p> | <p>◎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p> |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 <p>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였으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관할법원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을 사용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p> | |
| 한솔피씨에스(주)의 위탁 대리점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9810약일1675) | <p>한솔피씨에스(주)는 고객과 위탁대리점계약의 체결시에 사용하고 있는 위탁대리점계약서상 계약의 효력에 대한 규정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에게도 당해 계약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계속적인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목시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였으며, 대리점 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만료시 재계약 여부 및 계약의 중도해지시 해지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은 중요한 쟁점사항이므로 고객인 대리점은 사업자에게 항변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등의 반환 및 채권채무의 상계나 변제 등 상호간에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의 손해발생시에는 그 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인 대리점으로 하여금 계약의 종료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이나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p> | <p>◎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p> |